
정보공개 업무편람

2021. 4.

보건복지부

목 차

I. 목 적	1
II.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1. 개 념	1
2. 정보공개 청구권자	1
3. 청구인과 집행기관의 의무	1
4. 정보공개 전담청구의 설치·운영	2
5.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의 지정과 역할	2
6. 정보공개 제도의 원칙	3
III. 사전정보 공표대상	
1. 사전정보 공표원칙	5
2. 공표방법 및 시기	6
3. 사전정보공표 공개대상 목록	6
IV.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처리절차 흐름도	7
2. 처리단계별 주요사항	8
3. 정보공개 청구	9
4. 청구서 접수 및 배부	9
5. 청구서 이송	10
6. 공개여부의 결정	11
6-1.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3
6-2. 공개의 시행	14
6-3. 불복구제절차	16
6-4. 비용의 부담	17
7.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조정	18
[별표1] 사전정보 공표대상	19
[별표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41
[별표3] 수수료	49
[별지서식]	51

I. 목 적

- 정보공개제도와 관련, 실무 수행 시 통일된 기준 마련
-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업무편의 제공

II.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개 념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2. 정보공개 청구권자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청구인과 집행기관의 의무

- 집행기관의 의무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총 2개월 이내 처리
-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공개 받은 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설치·운영

-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는 전담창구를 설치·운영
 - 본 부 : 운영지원과
 - 소속기관 :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

5.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의 지정과 역할

- 정보공개책임관
 -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각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

-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총괄·조정·평가의 역할을 담당
- 정보공개담당관
 - 본부는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소속기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지정
 -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고,
 - 소관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 접수 및 부서 처리자 지정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6. 정보공개 제도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공개대상 정보
 - 본부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이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

○ 비공개대상 정보

- 단서규정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단,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2항)

○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간의 상호충돌을 막기 위함
- 법 제4조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안내
-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결정 불가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7두 2555 판례 中)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①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는 사유로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②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③ 정보공개 절차, ④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제4조제1항 vs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구분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등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효력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III. 사전정보 공표대상

1. 사전정보 공표 원칙

- 본부 및 소속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중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공개 가능한 사전정보 공표대상을 사전에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함
-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의 사전정보 공표대상 : [별표 1] 참조

2. 공표방법 및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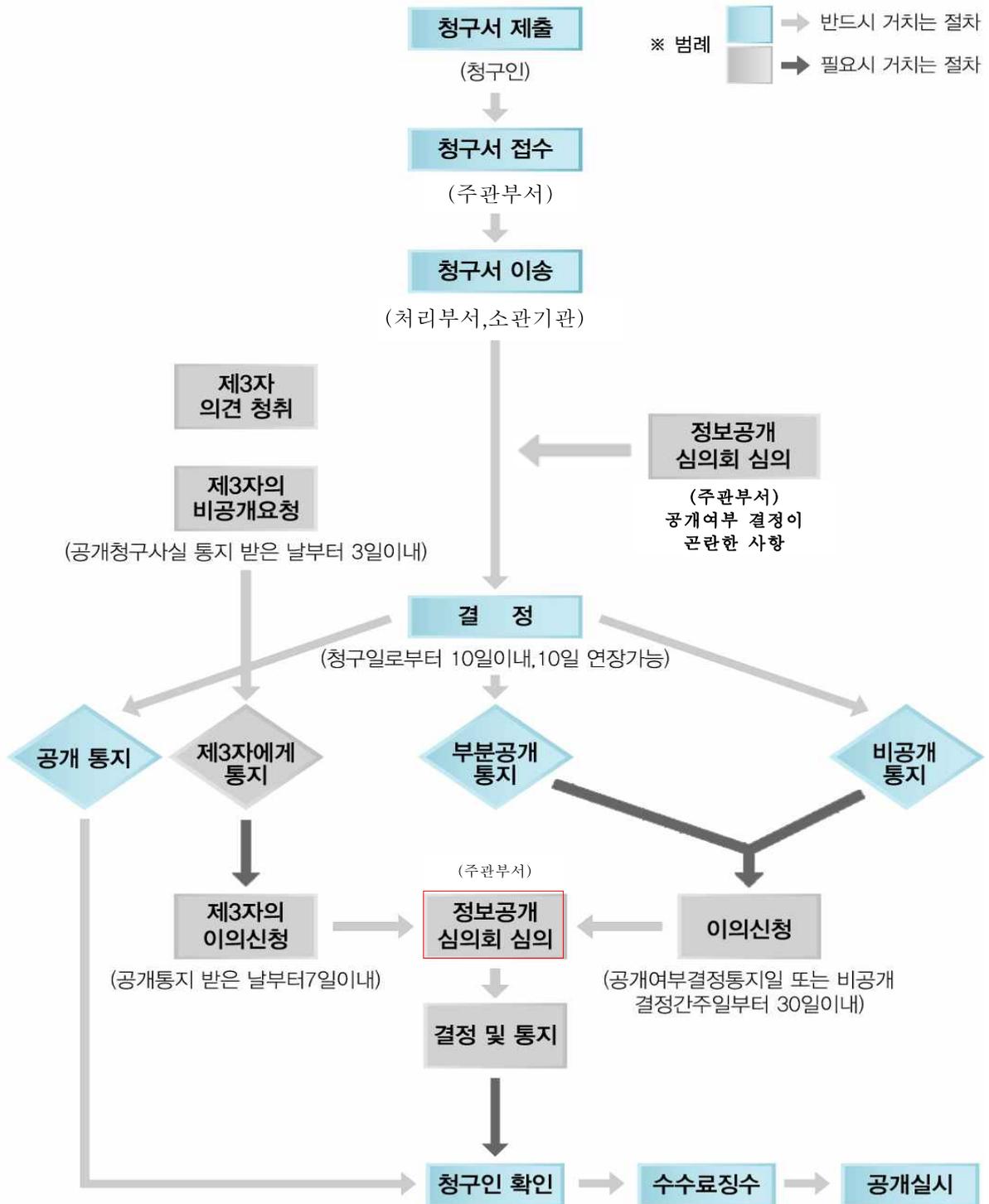
- 모든 사전정보 공표대상은 생산된 형태 그대로 공개
- 모든 사전정보 공표대상은 해당 공개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생산되는 즉시 공개함을 원칙

3. 사전정보공표 공개대상 목록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및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국민이 보건복지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IV.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처리절차 흐름도



2. 처리 단계별 주요사항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별지제1호 서식)제출 및 구술로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	---



청구서 접수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우편, 팩스, 직접청구 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등록 후 전자배부(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하거나 문서과에 보관)
-------------------	---



처리자 지정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자 지정(부서담당자)
------------------	---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여부 결정(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http://admin.open.go.kr)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는 즉시공개'로 처리
-------------------	--

↓10일(10일 연장가능)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결정통지서 관인날인(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청구건에 한함)
-------------------	---



공개실시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방문시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본인여부 확인)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보공개시스템상 수수료 납입(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전자화폐 등)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을 받은 후 우송
----------------	--

3. 정보공개 청구

- 공개의 청구 : 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함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 일반민원형식(편지형식 등)의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서식과 동일한 내용일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서로 접수함.
- 구술에 의한 청구 :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음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정보공개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제출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서의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담당부서에서는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함
 - 다만,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한 청구시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4. 청구서 접수 및 배부

-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에서 접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청구정보를 실제 보유·관리하는 처리 부서로 배부
 - 청구내용이 여러부서와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중 하나의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수 있다.
 - 여러부서와 연관된 청구건을 처리할 경우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접수증 교부생략이 가능한 경우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시
 -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5. 청구서 이송

- 우리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정보공개포털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이송으로 인한 처리지연

6. 공개여부의 결정

- 처리부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내용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방법 :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필요시 구술청취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술내용을 <제3자 의견청취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공공기관의 조치
 - 통지받은 제3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 결정유형 : 공개,부분공개,비공개,정보 부존재,즉시공개,진정질의 결정

- 부분공개 및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부분의 사유 및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가능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일반적으로 일반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 5항)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등으로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청구권이 부존재 및 진정·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결정시,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따라 7일이내 처리한다.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에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별지 제7호 서식)
 - 부득이한 사유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 된 정보의 내용이

-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6-1.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6-2. 공개의 시행

- 처리부서에서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에,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 공개처리절차
 - 청구인의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 청구인에 대한 확인사항(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본인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입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준비해 온 수입인지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뒷면이나 적당한 여백을 이용하여 붙이고 소인한 후 정보 및 자료 교부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처리 정보 : 파일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사본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함.
 - 일부공개에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6-3. 불복구제절차

○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접수(처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기각, 부분인용 결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문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소집, 처리과에 심의회 개최계획 및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처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지(7일 연장가능)
↓	
행정심판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행정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소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6-4. 비용의 부담

- 수수료의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함
- 비용의 산정 : 수수료와 우편요금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요금 등은 납부하지 않음
 - ※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산정 : [별표 3] 참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 온라인 납부, 수입인지, 현금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 납부 후 공개 (우편공개인 경우 해당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을 선납한 후)
- 비용의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용은 전자지급수단* , 현금, 수입인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낸다.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함

7. 정보공개심의회 의 심의 · 조정

○ 담당부서 및 처리부서가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 운영

○ 본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

- 간 사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4급 또는 5급

※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수 있는 사유(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 심의회 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 · 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별표 1]

사전정보 공표대상

1. 기관공통사항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행정심판 현황 및 재결례	행정심판 청구현황 및 재결례	매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운영 실태점검 결과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공개	매년	혁신행정담당관
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참고자료	매년	기획조정담당관
정부위원회 현황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	수시	혁신행정담당관
장관.차관 해외출장 현황	장.차관 해외출장 현황	분기	국제협력담당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수립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5년	국제협력담당관
의료 해외진출 현황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현황 (진출 개수, 진출 국가 등)	매년	국제협력담당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매년	국제협력담당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신규 등록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주요제도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신규 등록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주요제도 안내	수시	해외의료총괄과
연두업무 보고자료	연두업무 보고서	매년	기획조정담당관
연구용역보고서(환자조사 심층 분석)	환자조사 (필요시 환자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예정)	사업종료	정책통계담당관
연구용역보고서(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심층분석)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심층분석 (필요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연구용역 보고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예정)	사업종료	정책통계담당관
연구용역보고서(의료서비스이용 현황, 구 환자조사)	의료서비스이용현황(구 환자조사)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연구용역보고서(OECD 보건의료 질 통계)	일차의료, 급성기진료, 정신보건 등 분야 보건의료 질 지표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연구용역보고서(OECD 등 국제기구 통계 생산 및 관리)	OECD 등 국제기구 통계 생산 및 관리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업무계획 동영상	연두업무계획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된 동영상 파일	자료발생시	기획조정담당관
양자협상/FTA협상	한-미, 한-EU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자유무역협정) 관련 참고자료	수시	다자·통상담당관
알기쉬운 통상 정보	난해한 용어가 많은 통상 분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참고자료	수시	다자·통상담당관
소송 및 처분 등 업무처리 지침	복지부 소송 및 처분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 등	수시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개정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현황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현황	매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	매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목록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목록현황	매년	운영지원과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 업무 절차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 업무 절차 안내	수시	해외의료총괄과
보도해명자료(오보 대응)	오보 대응	수시	홍보기획담당관
보도해명자료(건전비판 대응)	건전비판 대응	수시	홍보기획담당관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배포	수시	홍보기획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친절성, 설명력, 정확성, 신속성 등) 조사	매년	보건복지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범위 운영절차 등을 규정	수시	보건복지 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	수시	보건복지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수시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규정 개정시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 임직원수 현황	매년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개정시	감사담당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보건복지부 감사에 관한 규정	수시	감사담당관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백서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반상회보	매월 배부하는 반상회보에 정책 홍보 게재	매월	홍보기획담당관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	과제명, 완료일, 조치사항, 성과	수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규제개혁 과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기대효과	수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국회업무보고자료(임사회, 국정감사)	수시	기획조정담당관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기관명, 정수현황, 증감현황, 보유현황	매년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출장 현황	공무국외출장 현황	반기	국제협력담당관
감사계획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특별감사 실시 계획	수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특별감사 결과	수시	감사담당관
WTO/DDA 협상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관련 참고자료	수시	다자·통상담당관
OECD Health Statistics(요약본) 소책자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OECD 통계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1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 조달/수의계약 현황(2015년 2분기까지는 3천만원 이상 계약현황 공개)	분기	운영지원과
재정사업평가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매년	재정운용담당관
재정사업 성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성과보고서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응급의료기금 운용상황 공개	응급의료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매년	응급의료과
예산 현황 공개	2019년 예산공개, 2019년 예산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예결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예산 사업별 배정내역	예산 사업별 배정내역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응급의료기금 수입 및 지출 사업별 설명 자료)	응급의료기금 수입 및 지출 사업별 설명자료	매년	응급의료과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및 지출 사업별 설명 자료)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입(수입) 및 세출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현황, 회계별 결산 현황, 재무결산 현황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수시	재정운용담당관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자료(예산, 기금)	보건복지부 연도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자료(예산, 기금)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보건복지부 2019년 세출(지출) 사업별 설명자료(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건복지부 2019년 세출(지출) 사업별 설명자료(일반회계, 특별회계)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민간투자사업 최초협약서 및 변경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내용 공개	협약 내용 변경 시	재정운용담당관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업무처리 방법 안내	수시	재정운용담당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산운용성과	자산배분실적, 운용평잔, 운용수익률	분기	재정운용담당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보고서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보고서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국고보조금 현황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결산 현황 공개	결산 공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예결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2019년도 예산 세입 설명자료 공개	2019년도 예산 세입 설명자료 공개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2019년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응급의료기금 수입 및 지출 사업별 설명 자료)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	매년	응급의료과
2018년 세입(수입) 및 세출(지출) 사업별 설명자료(예산)	2018년 세입(수입) 및 세출(지출) 사업별 설명자료(예산)	매년	재정운용담당관
행정자료실 신간자료목록	자료실에 입수된 각종 도서의 서지사항(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년 등) 제공	반기	운영지원과
포상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및 공적	반기	인사과
포괄적 정책연구용역 현황	당해연도 수행연구과제 현황	수시	기획조정담당관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수시	정책통계담당관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정책	코로나 19와 관련된 발생동향, 홍보자료, 피해지원정책 등 공개	신규자료발생시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년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매년	운영지원과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정, 평가결과 등	매년	혁신행정담당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수시	아동권리과
위임전결규정	보건복지부 각 부서의 위임전결업무의 범위 전체	수시	혁신행정담당관
연구용역보고서(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시설공사 관리규정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시설고사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즉시	운영지원과
수시채용계획	보건직 채용계획 공고문	매년	인사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마련	개정시	운영지원과
부내행정지원시스템 및 대국민 홈페이지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부내행정지원시스템 및 대국민 홈페이지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매년	정보화담당관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수시	비상안전기획관
보도자료 배포	강원도 동해안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수시	비상안전기획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문)	매년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용 현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페이지뷰, 방문자수	반기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부 포토 뉴스	보건복지부 관련 행사 등 포토로 전하는 뉴스	수시	홍보기획담당관
보건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전문)	수시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수시	운영지원과
보건복지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	개정시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소관 신고포상금 운영 및 지급기준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및 운영하고 있는 사업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운영내용을 한곳에 모아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수시	운영지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전문)	수시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매년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현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현장 제·개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	수시	혁신행정담당관
보건복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보건복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자료	5년	정책통계담당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규정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수시	보건복지상담센터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면허·자격 증명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즉시	운영지원과
따스아리 라이브	격주 화요일 보건복지 정보를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방송(격주 화요일 오후 2시 라이브)	수시	홍보기획담당관
들려주고 싶은 보건복지부 정책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수시	홍보기획담당관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수시	운영지원과
기록관리기준표	보건복지부 기록관리기준표	매년	운영지원과
기관 해외출장 보고서	보건복지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현황	수시	국제협력담당관
국유재산 관리 현황	본부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목록 및 관리현황 (공개입찰 현황은 각 소속기관에서 관리)	수시	운영지원과
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매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중앙사 고수습본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 검결과 공개	매년	비상안전기획관
국가승인통계 연구용역보고서(한 국의 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강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등	매년	사회보장총괄과
국가승인통계 연구용역보고서(국 민보건계정)	최종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공급자별, 기능별, 재원별 의료비 규모	매년	정책통계담당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 유형, 보유근거, 주요항목, 보유기간	수시	정보화담당관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매월	운영지원과

2. 사회복지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매년	지역복지과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 하인 가구 지원하기 위한 확인사업 안내,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연계 등 안내	매년	복지정책과
제4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제4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5년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안내	의료급여사업 지침	매년	기초의료 보장과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매년	기초의료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한 사례에 관한 안 내	1회 발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 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매년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계획 전반	매년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개정시	급여기준과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지침	매년	급여기준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고시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 및 비용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함	개정시	기초의료보장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 액 및 부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 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수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2020년도가 최종 본)	부정기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구순구개열 치과교정치 료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실 시 안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의료급여 적용방안 및 사전등록절차 안내	부정기	기초의료보장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	수시	기초생활보장과
요양비 지원 현황	요양비 지원 현황	매년	기초의료보장과
시도별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 현황	시도별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건수	매년	기초의료보장과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연도말 기준)	매년	기초의료보장과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등 기준 금액	수시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 등 지침	매년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계부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3년	기초생활보장과
기준 중위소득	*20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 공표	매년	기초생활보장과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금액	수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세부지침	매년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세부 현황통계	매년	기초생활보장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고시함	개정시	기초의료보장과
희망리본사업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이관)	희망리본사업 안내 (2015년부터 사업종료- 고용노동부 이관)	종료사업 (노동부 이관)	자립지원과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자활사업안내(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매년	자립지원과
자활성공률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매년	자립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매년	자립지원과
자활사업 지원체 운영	중앙·광역·지역 자활센터 현황	수시	자립지원과
자활사업 안내(I)	자활사업 안내	매년	자립지원과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위탁 및 수탁 계약 체결	매년	자립지원과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중사사용)	개정시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매년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5개년)	5년	자립지원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매년	자립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안내	격년	지역복지과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사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	시군구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 및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 사례집	매년	지역복지과
읍면동단위 민관협력 매뉴얼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 매뉴얼로 통합됨)	읍면동 맞춤형 민관협력 업무 매뉴얼	수시	지역복지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사례집	읍면동 복지허브화 운영 우수사례집, 찾아가는 복지 분야별 활동 사례집 등	수시	지역복지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매뉴얼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	수시	지역복지과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이용 안내	보육료, 양육수당 등 온라인신청가능 사회복지업무의 신청절차 등 안내	매년	복지정보기획과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사업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이용 방법,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여 복지사업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제시	지침개정시	복지정보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세부운영 지침	매년	사회서비스사업과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매년말 기준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관 개소수	매년	사회서비스지원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내용	의사상자 보상금액 및 지원내용	매년	사회서비스지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매년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추진방향, 사업별 시행계획, 이용권 발급기준, 이용자의 비용부담 기준, 사업별 예산,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매년 공표	종결(각 사업별 지침으로 서비스 제공계획 공표)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매년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종사자 관리,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업무 전자화 시책 및 재무회계규칙 등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매년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 관리감독 등 관련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지자체 및 법인 등에서 업무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매년	사회서비스지원과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관 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재정지원 방법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내용 등을 안내	매년	사회서비스지원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진제도 운영지침	사업개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매년	사회서비스정책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기관명칭, 전화번호	매년	사회서비스정책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안내	고시개정시	사회서비스정책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 기부식품 및 이용자 관리, 지도감독 등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	매년	사회서비스정책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자료	매년	사회서비스사업과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사회보장정책의 영역과 범위를 기준으로 14개 분야로 구성된 사회보장의 주요현황을 269개 지표로 제공	매년	사회보장총괄과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령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연구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례집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 대한 사례집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사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매년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자료	2014~2020년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자료(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	수시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수시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 연구보고서	수시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격년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 5개년 수립자료)	5년	사회보장총괄과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	수시	사회보장총괄과

3. 장애인정책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역사회 중심재활 분야) 안내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중 지역사회 중심재활 분야 안내	매년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확대, 교육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 장애인정책 5개년 종합계획 중점과제	5년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능력 및 장애유형별 경제상태,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등	3년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자료	매년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현황	매년	장애인정책과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사정기준의 구체적 해석 및 표준진단 방법	수시	장애인정책과
장애등급심사규정	장애등록 신청 및 진단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수시	장애인정책과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고시	수시	장애인 권익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황(지역별 센터 개소수)	매년	장애인 권익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건물 유형별 및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	5년	장애인 권익지원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장애인시설 종류별,시군구별 시설명,시설장, 입소 장애인수,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설치일, 법인명(대표자명)	매년	장애인 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매뉴얼 안내	개정 시	장애인 권익지원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및 서비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및 서비스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전문인력 현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문인력 현황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및 계획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현황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현황	수시	장애인 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 심사기준	수시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전년말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공표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 융자현황	장애인자립자금 시도별 융자현황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복무기준 및 사업담당공무원 및 수행기관 담당자의 추진 지침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일자리 만족도 조사 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의 종합 만족도 조사 분석 보고서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비 지원현황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지원 현황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지원현황	매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물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장애인생산물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수시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구 교부품목 및 내구연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품목 및 내구연한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수시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지급현황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현황	매년	장애인 자립기반과
활동지원기관 평가	활동지원기관 평가기준, 시기, 방법 등	수시	장애인서비스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사업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의거 설치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안내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명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명부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대상자 선정,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기관 민 활동지원인력기준 등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산정원칙,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수시	장애인서비스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장애인의 활동지원 교육기관 현황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발달재활서비스사업,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시도별 사업수행기관현황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현황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안내	여성장애인 교육 및 출산비용 지원등 안내	매년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부모상담지원, 가족휴식 지원사업 등 안내 등	매년(변동시수시)	장애인서비스과

4. 인구정책관련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 특화분야) 안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여성.어린이 특화분야) 안내	매년	출산정책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년	인구정책총괄과
정부 체외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황	정부 체외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황	반기	출산정책과
정부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황	정부 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황	반기	출산정책과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산후조리원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용요금, 입산부실정원)	반기	출산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매년	인구정책총괄과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 공고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 공고	매년	인구정책총괄과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편람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변경내용, 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편람, 지도감독 등	매년	출산정책과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지침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교육시기, 교육비, 교육기관 등	수시	출산정책과
모자보건사업 안내	난임부부지원사업,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매년	출산정책과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 지원안내	교보생명 아름다운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숨결 살리기 지원사업안내	매년	출산정책과
전국아동학대현황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유형별, 지역별, 장소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상담원 업무현황 등 전국 아동학대 현황 통계	매년	아동학대대응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추가보고서	수시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5년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5년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안전사고통계(통계청 자료)	연도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아동안전사고 관련 현황 통계	매년	아동학대대응과
아동분야 사업 안내	연도별 아동분야 사업안내	매년	아동권리과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동복지시설 및 입소아동 현황	매년	아동권리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운영지침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운영지침	매년	아동권리과
아동급식 지원 현황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현황 통계	매년	아동권리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아동공동생활가정 일람표	매년	아동권리과
소년소녀가정 현황	소년소녀가정 현황	매년	아동권리과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매년	아동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시군구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 현황	수시	아동권리과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	매년	아동권리과
국내외 입양현황	국내외 입양현황	매년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 현황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매년	아동권리과
화장시설현황	시도별 화장시설현황	매년	노인지원과
화장물	시도별 화장건수 및 화장물 현황	매년	노인지원과
치매안전센터 사업안내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비용 경감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지원사업안내	매년	치매정책과
장사업무안내	장사업무안내	매년	노인지원과
시니어직능클럽 사업 운영 안내	시니어직능클럽 사업 운영 안내	매년	노인지원과
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 안내	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 안내	매년	노인지원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안내	매년	노인정책과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학대유형 현황, 현장조사 및 종결사례 현황, 학대피해노인 현황 등	매년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매년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지원사업 지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종류, 업무처리 절차, 신청기준 등	매년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실태조사	자녀와의 연락·왕래빈도, 친구 및 이웃과의 연락·왕래빈도, 자녀로부터의 지원 등 가족및 사회적관계, 지출금액, 연간 총소득 등 경제상태, 종사직종,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 경제활동 실태, 단체활동 참여율,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등 여가·사회활동 실태, 비만도 수준, 하지근력 상태 등 기능상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등	3년	노인정책과
노인복지시설현황	전국 노인복지시설 현황 제공	매년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안내	개정 시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 변경내용,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예산현황,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기관, 치매지원사업, 실종노인 예방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학대피해노인 쉼터, 장사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등 사업 안내	매년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2020년 1월부터 6개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	매년	노인정책과
고령자친화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고령자친화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매년	노인지원과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정책에 관한 전반적 사업안내	매년	치매정책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조사 생략 기준을 규정한 고시	수시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개정시	요양보험제도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개정시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 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수립	5년	요양보험제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수시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 교부 등 양성지침 안내	매년	요양보험운영과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 고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 고시	개정시	노인지원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등급판정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개정시	요양보험제도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수시	요양보험제도과
표준보육프로그램 안내	표준보육프로그램 안내	신규 제작 시	보육기반과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 지침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 지침 (2012년 시행 최종본)	개정 시	보육기반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및 공표명단(조사불응) 사업장 현황	수시	보육정책과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매년	보육사업기획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舊 중앙보육정보센터) 이용 안내	매년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매년	보육사업기획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018년부터 평가기준 통합됨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이상 어린이집)	2018년부터 평가기준 통합됨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9인이하)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9인이하 어린이집)	2018년부터 평가기준 통합됨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평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수시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정보공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유형, 주소, 전화번호, 정원, 현원, 인가인자 등	매일	보육정책과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2015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매년	보육사업기획과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지역별 연령별 보육현황	매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기본계획	보육정책 기본계획	5년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안내	보육사업안내	매년	보육정책과
보육교직원 국가자격통계	보육교직원 국가자격통계	반기	보육정책과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등 어린이집 구별에 필요한 정부	분기	보육기반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개정 시	보육기반과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매년	보육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안내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매년	보육사업기획과

5. 국민연금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차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차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장애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등급별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액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유형별 수급자 및 지급액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내용 등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 수급사유별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및 지급액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개정시	국민연금정책과
노령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완전, 감액, 조기, 특례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수급자수와 지급액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수시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현황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매년	국민연금정책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기금회계결산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재무결산 요약(기금개요,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재정운영표)	매년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기준,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	수시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시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자산배분안	매년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 자산배분정책,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성과평가 및 보상, 위탁운용, 의결권행사,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보고 및 공시, 감사, 자산별 세부투자지침 등	수시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건, 회의록, 위원 명단	수시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 및 총 수익률, 국민연금 기금(금융부문) 운용 정량평가, 내·외부 평가기관의 심층분석,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정책제언	매년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	매년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사례집	기초연금을 운영하며 일선 담당자들이 직접보고 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지침)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지침) →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사업안대로 변경	종료(기초연금 변경)	기초연금과

6. 보건의료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안내	개정시	한의학정책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및 관리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수시	약무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현황	수시	운영지원과
전문병원 제도운영	전문병원 지정분야(질환, 질료과목등)와 지정기준·방식·주기등	수시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수시	약무정책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	수시	약무정책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규정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등)의 종류별 표준업무범위와 증점을 두는 권장질환등	수시	보건의료정책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안전상비의약품품목	수시	약무정책과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기준 의약전문가 검토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기준 검토의약전문가회의결과	수시	약무정책과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상용처방의약품목록관리	수시	약무정책과
개방병원제도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병원제도의 운영과 신고기준, 진료 절차 및 준수사항, 진료 후의 관리 절차 등	수시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	수시	질병정책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 지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 지침	수시	의료자원정책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 현황	전문과목별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매년	의료인력정책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기관 지정	수시	의료자원정책과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분야별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매년	의료자원정책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분야별 기관 수 및 정원 현황)	매년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관련 개정된 고시 내용	수시	의료인력정책과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의 결정방법	수시	의료인력정책과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	수시	의료자원정책과
요양기관 종별 보건의료 인력수	요양기관 종별, 보건의료 인력수	매년	의료자원정책과
요양기관 전문의 인원현황	요양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수시	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수시	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수시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결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23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매년	의료인력정책과
병상수 현황	요양기관 병상수 현황	수시	의료자원정책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보고서(5년주기)	5년	의료자원정책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유권해석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관련법령(의료법제21조)유권해석안내	법령개정시	의료기관정책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진료권역별상급종합병원의소요병상수고시	수시	의료기관정책과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	고시개정시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료기관의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수준을평가하기위한인증기준	수시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2019년의료기관개설및의료법인설립운영편람	수시	의료기관정책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및평가에필요한세부사항규정	수시	의료기관정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 명단	상급종합병원지정의료기관명단	수시	의료기관정책과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	국공립병원(공공보건의료기관)수탁연구관련연구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집행기준등안내지침	매년	의료기관정책과
한약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그밖의정보	5년	한약약정책과
한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한약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매년	한약약산업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한약처방의종류및조제방법에관한규정	수시	한약약정책과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한약재수급관리규정고시	수시	한약약산업과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대학한약관련학과인정기준	수시	한약약정책과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일반국민,한의입원및외래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한방의료에대한일반인식,이용경험등조사),한약소비실태조사(한방의료기관,약국,한약방등을대상으로한약처방·조제·판매현황등조사)	3년	한약약정책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한약약 건강증진분야)	한약약공공보건사업안내	매년	한약약정책과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수련한방병원지정을위한자료조사등의업무에관한위탁	수시	한약약정책과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기존한약서에대한잠정규정	수시	한약약정책과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국·공립병원에한방진료부가설치되어있는경우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	수시	한약약정책과

7. 공공보건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지역암센터 운영지침	지역암센터지정개요,운영체계,추진사업등지역암센터운영지침(현재개정작업중)	수시	질병정책과
제가암환자 관리사업 안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_방문건강관리사업내세부내용중인제가암환자지원사업추진을위한안내	수시	질병정책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및제3항의거,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지정고시	개정시	응급의료과
암예방 교육·홍보 자료	암예방교육,홍보자료	수시	질병정책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현황	암관리법제22조와관련하여말기암환자대상완화의료전문기관지정서를발급한지정기관현황공개	수시	질병정책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 보호조치	「결핵예방법」 제15조에따라입원명령을받은결핵환자의부양가족에게같은법시행령제5조제1항,제2항및제5항에따른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고시로전문을공개	수시	질병정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요건및처리절차안내	매년	질병정책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	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시행(17년5월)후최초로심뇌혈관질환에대해예방-치료-관리의전주기적관점에서수립추진하는법정계획	수시	질병정책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검역법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병을규정한고시로게정시그전문을공개	수시	질병정책과
메르스 백서	메르스특성및대응과정,평가,교육과제인등으로구성된메르스관련백서	수시	질병정책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완화의료전문기관지정기관및지정을준비하고있는의료기관의참조용사업안내	매년	질병정책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암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위해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암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	수시	질병정책과
국가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전국민을대상으로암발생자에대한자료를수집,분석한결과인암등록통계제공	매년	질병정책과
국가 암등록 통계사업 안내	암관리사업의근간이되는암등록통계자료생산등국가암등록통계사업의사업운영주체인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의료기관,대한의무기록협회등에서참고하고있는사업안내지침서	매년	질병정책과
국가 암검진사업 안내	우리나라사망원인1위인암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를유도함으로써암의치료율을높이고암으로인한사망을줄이는것으로목적으로하는국가암검진사업의수행기관에서참고하고있는사업안내지침서	매년	질병정책과
결핵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결핵관련 기본시책, 환자 등의 치료 및 보호관리, 결핵에 관한 홍보· 교육· 조사연구, 다제내성 결핵의 예방 및 관리 등이 주요 내용	5년	질병정책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개정내용	감염병의예방및치료를위하여의약품공급이긴급하다고인정될경우약사법에따른수입자의지정이나수입절차,품질검사,표시기재와관련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에협조요청할수있는사항을규정	수시	질병정책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방의료원및직접집사병원의운영평가보고서	매년	공공의료과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	설립주체별(중앙행정기관,지사체등)설립운영되고있는전국공공의료기관현황	매년	공공의료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의료공급이부족한지역을의료취약지로지정,지역내거점의료기관을지정하여시설,장비,인력지원등서비스지원안내	매년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지정결과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수시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각종의료보장제도에서의료혜택을받을수없는사람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수행의료기관목록	매년	공공의료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고위험산모, 중증질환신생아치료를통합적으로담당하는센터를설치하여안전적분만환경조성을위하여사업수행의료기관선정결과	수시	공공의료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분만가능한산부인과가없는분만취약지역에산부인과가설치운영될수있도록시설,장비비등을지원하기위한사업수행의료기관선정결과	매년	공공의료과
공공전문진료센터 현황	4개분야(어린이,호흡기,류마티스및관절염,노인)전문질환센터현황<호흡기전문질환센터,류마티스및퇴행성관절염질환센터,노인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	공공의료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수익성이낮은보건의료서비스등을원활하게제공하기위해일정한기준을갖춘의료기관을공공전문진료센터로지정	지정기준변경시	공공의료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안내	권역별로고위험산모의분만.치료,고위험신생아치료를담당하는통합치료센터설치안내	매년	공공의료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국민응급의료서비스인지도및만족도조사결과	매년	응급의료과
응급의료 관련 통계	응급의료통계연보	매년	응급의료과
국가응급의료사업 안내	국가응급의료사업안내	수시	응급의료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규정	수시	혈액장기정책과
헌혈의집 설치사업 안내서	국고지원헌혈의집설치사업안내서(15년최종본)	개정시	혈액장기정책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특정수혈부작용및채혈부작용보상규정	수시	혈액장기정책과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업무 지침	조혈모세포기증사업관련업무지침	수시	혈액장기정책과
인체자원 단위은행 지원사업 안내	인체자원단위은행지원사업안내서	매년	생명윤리정책과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안내	배아생성의료기관표준운영안내서	수시	생명윤리정책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지정평가기관및교육기관명	수시	생명윤리정책과

8. 보건산업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수시	보건산업진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관계부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3년	보건산업진흥과
제약산업육성 종합 정보 3	정부지원사업 연구보고서	수시	보건산업진흥과
제약산업육성 종합 정보 2	인허가 관련	수시	보건산업진흥과
제약산업육성 종합 정보 1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계획, 시장정보, 세미나 자료	수시	보건산업진흥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5년	보건산업진흥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수시	보건산업정책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	보건의료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 등 (19년 현재 10개기관 지정)	수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 선정 공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선정 내용	수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공고	매년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내용	수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내용	수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중개 연구분야 시행계획 공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중개연구분야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 공고	수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신기술개발분야 시행계획 공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신기술개발분야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 공고	수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선정공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수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빅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안건및속기록	수시	의료정보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수시	보건산업정책과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시	보건산업진흥과

9. 건강보험·의료보장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 지침	매년	보험정책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 수	매년	보험정책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수	매년	보험정책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의거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안내	개정시	보험급여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등 의거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	보험급여과
보험료 경감 총액 및 세대 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취약 지역 및 취약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	매년	보험정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수시	보험정책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수시	보험정책과
건강보험료 현황	건강보험료 현황	매년	보험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주요내용	수시	보험정책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의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시	보험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액(일반회계, 기금)	매년	보험정책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건강보험 재정현황	건강보험 재정 수지(총수입, 총지출, 당기수지)	매년	보험정책과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매년	보험정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현황(운영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현황(운영병원)	분기	보험정책과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내용 고시 개정사항	수시	보험급여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수시	보험급여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 내용	개정시	보험급여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수시	보험급여과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청구 방법, 심사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청구 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내용	수시	보험급여과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대상 품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	수시	보험약제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사항	개정시	보험약제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수시	보험약제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수시	보험약제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 공개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사전 예고	매월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개정시	보험평가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시	보험평가과
요양급여 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요양급여 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수시	보험급여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고시	개정시	보험평가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요양기관명, 대표자, 성별, 주소, 위반행위, 처분 등	반기	보험평가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예산 현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예산 각목명세서	매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	건강보험 행정심판 재결례	매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한약제제의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시	의료보장관리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진료비용등에공개에관한기준고시	개정시	의료보장관리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	의료보장관리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2020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매년	의료보장관리과

10. 건강정책 분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지침서	매년	건강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안내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4년	건강정책과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소록	반기	건강정책과
우수건강도서 선정 결과	우수건강도서 선정 경과 및 결과(공모기간, 대상, 방법, 심사기준, 선정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	수시	건강정책과
보건의달 행사 정부포상 대상자	보건의 달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매년	건강정책과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개정시	건강정책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 주요내용, 추진절차, 신청방법 등	매년	건강정책과
농어촌 보건소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매년	건강정책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대형숙박목욕시설)	2018년대형숙박목욕시설안전대진단결과공개	수시	건강정책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5년	건강증진과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매년	건강정책과
공중위생교육 교재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공중위생교육 교재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수시	건강정책과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매년 사업추진방향(유공자표창,단체관리), 업무편람(법령변천내역, 업소및시설관리,이미용면허관리,행정처분,구법적용대상,관련고시등), 공중위생담당부서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공표되고 있음	매년	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 안내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매년	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시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매년	건강정책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 교육 실시단체 고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는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수시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연구사업	건강증진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매년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업 우수지자체 선정결과	보건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결과	매년	건강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내용, 추진절차, 신청방법 등	매년	건강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건강생활지원센터 선정 결과	매년	건강정책과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 안내	시도 교육청 및 전국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방법, 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	매년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연사업의 사업목적, 방법, 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지침 등	매년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신체활동분야)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체활동 관련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	매년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방문건강관리분야)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사업목적, 방법, 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	매년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영양분야)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업의 사업목적, 방법, 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	매년	건강증진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건복지장관에 위임된 담뱃갑 경고그림등 표시내용	수시	건강증진과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5년	건강증진과
건강검진사업안내	건강검진사업안내	매년	건강증진과
치과의사전문의 현황	치과의사전문의 수	매년	구강정책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분야)	구강보건분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	매년	구강정책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매년	구강정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	매년	정신건강정책과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인권교육 안내	수시	정신건강정책과
정신질환 실태조사	정신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자료	5년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시설 현황	전국 정신요양시설 주소, 시설현황, 운영주체 및 사회복지시설 주소, 유형 등 정보	매년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제도개선방안 연구	정신건강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수시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관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정원산정기준, 수련과정 운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표준교육 내용 등	수시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	전국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과정명, 정원, 주소 등 수련기관 정보	매년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전국 광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 연락처 정보	매년	정신건강정책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계획서, 자살실태조사, 자살유해정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시	자살예방정책과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주기	담당부서
정신건강사업 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자료(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안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자살예방 센터 운영,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의료기관 운영 등)	매년	정신건강정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결과	해당정보는 정신질환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사업안내 업무에 포함, 변경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안내)	수시	정신건강정책과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②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③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④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⑥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 ⑦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⑧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⑨ 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 11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⑩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⑪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①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②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③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④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⑤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⑥ 양·다자간 교류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 ⑦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 ⑧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 ⑨ 보건인력·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 ③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 ④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⑤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⑥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 ②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③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 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 ⑥ 의료 및 복지 시설·기관 행정처분
- ⑦ 부적합판정 특수의료장비 현황(수사기관의 경우 제외)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②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⑪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⑫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정 결과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②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 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 ⑥ 의료기관 세부평가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 병원차관 관리 등 의료법인 관련 정보
- ⑦ 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오송생명과학단지·대규모 복지시설·편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별표 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중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임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작성 방법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년 월 일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허용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요청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직급		

정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③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원	원	원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 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③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원	원	원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 3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